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5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 강대식 · 강선영 · 송언석

최은석 · 강승규 · 김예지

배준영 · 김소희 · 박상웅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 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 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

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항시설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 ① |
| 호와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의2. 「공항시설법」 제32조의 |
| | 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 |
| | 성된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 |
| | 시설 사용료 |
| 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